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 · 제120조의2의 요약

- 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개인에 대한 지급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지급의 모든 경우에 소득세법 제164조 규정 준용함.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임.
- 지급명세서미제출, 불성실제출시 미제출·불성실 지급금액×2%의 가산세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경우 :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이나 면제소득만임(외국에 대한 소득지급 원천징수,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대신하는 경우 등 : 2002년 7월 1일부터 제출)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용료소득, 유기증 권양도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함(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제출 면제소득 : 국내법상 비과세·면제소득, 조세조약상 면제 신청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경마환급금, 카지노이익 등, 원천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 소득, 지급명세서제출할 실효성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예금잔액 30만원 미만 1년간 무거래 이자·배당소득, 계좌별 1년간 이자·배당소득 3만원 미만)

●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법 제120조제1항 · 제120조의2제1항)

1. 본 조의 개요

일반채화 · 용역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하고 건네주어 소득이나 거래가 파악되고 검증된다. 그러나 법인이 외부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사업자인 경우도 소득자료를 작성하여 건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법인이 일반자연인에게 이자 · 배당 · 자유직업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국내사업장

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운송장비 등 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또한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도 1년분을 합계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즉 2개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본 조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없다. 또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2001년까지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2002년 7월 1일부터는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기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제출의무 규정의 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로 하여금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에 상응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모든 거래나 지급사실을 과세자료화하고 근거과세나 공평과세라는 세정의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즉 소득을 수취하는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반면 과세소득의 포착이 어려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반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의 지급에 대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당해 소득수취자들의 소득발생원천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거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 미제출 불분명의 가산세의 적용

① 2%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지급명세서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제출되거나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른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불분명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사유 유형

본 법 제76조제7항은 미제출가산세 2%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둘째 기본요건이 흠결되거나 불확실·불분명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소득을 지급했는데 미제출한 경우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미제출로 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성명·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불분명으로 본다. 또한 소득구분이 잘못 기재된 것은 해당 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지연제출기간내에 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II.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법 제120조제2항 · 제120조의2제2항)

①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방법

내국인·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제출대상 제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법인도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방법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외국법인도 해당)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본 법상의 소득지급자라면 사업영위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4조로 위임 규정하고 있다.

본 항이 전면 준용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4조를 전문 열거하고 중
요사항을 해설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급명세서제출대상소득

1) 국내에서 법인에 이자소득지급 등 (법 제120조제1항)

① 법인의 이자소득 · 투자신탁의 이익 (본 법 제73조제1항)

본 법 제73조는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소득에 대한 본 조의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같은 범위이다. 물론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내국인 및 외국인 등의 자연인에게 위의 모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뿐 아니라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자소득에는 사채이자뿐 아니라 채권할인발행차금 등 자금사용에 대한 대가로써 이자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② 개인에 대한 이자·배당·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자유직업적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64조는 국내에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수입금액,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이다. 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지급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있다.

③ 지급명세서작성 위임여부

증권회사가 소액주주 범위에 속하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매입한 주식으로서 위탁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가 증권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 상장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근로소득 등의 납세조합원천징수

한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퇴직소득의 경우 지급자인 외국인 본인은 국내에 소재하지 않아 명세서제출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소득자들을 관리하는 납세조합은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제출특례

(소득세법 제164조의2)

① 이자·배당·부동산·운송장비임대·인적용역·기타소득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특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부동산소득·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운송장비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즉 대부분 매년 2월 말일임)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외국인 중 비거주자 외국인 등도 해당된다.

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

본 법 제98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써 국내에서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해 지급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직접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의 경우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③ 부동산소득의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 할지라도 법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제출배제 소액·소규모소득

① 지급명세서제출규정 적용제외소득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는 지급명세서제출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제외(소액부징수·소액수입 등) 소득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소득은 소득의 크기나 세액이 적고 원천적으로 과세를 제외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과세자료확보의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② 지급명세서제출 면제소득 등

크기나 규모 및 중요성 측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것을 소득세 법시행령 제2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1건 당 1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3. 외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제외 가능한 경우

①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원칙내용

- 외국법인에 대한 제반소득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지급명세서제출 제외되는 경우의 개념분류
 - ① 원천적인 조세면제·비과세 ②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재무활동소득(이자·배당, 등록동산, 실물자산임대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③ 국내원천 적극적 활동소득(국내관련, 국내사업장 귀속에 관계없음)(부동산 등 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사업활동소득, 인적용역소득) ④ 경마·복권 등 사행성소득(우발적)

②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의 지급명세서제출 면제 열거

2002년 7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상 비과세·면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관련소득,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등의 당첨금품과 경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원천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인 소득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2. 법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8호 · 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0. 12. 20 개정)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2009. 2. 4 개정)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2010. 12. 30 개정)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8. 그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8. 2. 29 개정)

▲ 시행규칙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⑰ 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 · 선박 등 임대 · 인

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2010. 3. 31 개정)

4.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의무자

1) 소득금액 직접 지급법인

① 소득금액 지급자 본인인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금액을 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소득을 받은 자의 과세소득이 노출되어 정부의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뜻이 있다.

대부분의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를 갖는데 지급금액의 3%부터 25% 등까지 여러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수취자의 합산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모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 본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데 내국영리·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면 마찬가지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자 본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득금액 지급자기준으로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규정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소득세법 규정을 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규정내용상 지급명세서 대상금액 등 중요부분은 같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대상금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중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급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는 본 법을,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 즉 수령자를 기준으로 하여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을,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지급명세서 대상금액을 본 법은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73조에 의거 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원천징수가 되므로 지급명세서제출개념을 대치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에 대한 소득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본 법은 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상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본다. 즉, 지급자 기준으로 의무자를 판단한다.

2)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외국법인이 채권 또는 주식·출자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채권매수자·발행법인 등)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3) 지급자의 대리인 및 수임인 (소득세법 제164조제9항)

① 지급자 대리인 및 수임인

일반적으로 경비나 대가를 부담하는 자 본인이 소득을 지급하지만, 소득수취자의 다수성·지역분산성 금액의 분할 및 소규모성 등으로 인해 소득지급행위자체가 위임되거나 대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수임인이나 대리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즉, 소득지급을 위임받으면서 세법상의 지급명세서작성제출의무도 이전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자소득이 지급된다든지 배당금지급시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는 각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이 채권이나 증권의 소지자와 접촉하게 되므로 이들이 이자·배당소득을 대신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 작성 및 원천징수의무도 부담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는 쌍방계약이 없더라도 본 법이나

세법의 강제규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② 인정상여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명세서작성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후 기한내에 원천징수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급명세서의 유형과 원천징수영수증

1) 일반적인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의 제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에 관한 명세서의 일종이다.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 및 변경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와 거래사항이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② 외국법인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본 법 제98조에 의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외국법인의 소득도 국내에서 총액을 파악해 보았자 과세자료의 가치는 있겠지만 과세금액추가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소득이나 지출비용이 국내사업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 실질적 관련 여부 등을 관할세무

서장이 판단키 위해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2) 원천징수명세서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의제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제의 개념

본 법 제73조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소득지급시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지급자료의 작성목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소득자에게 주고, 관할세무서에도 제출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분 지급명세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필요없다.

② 지급명세서의 유형과 작성방법

지급명세서의 범위로는 지급명세서라고 명명되는 것 이외에 일반원천징수영수증(대부분의 소득지급시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월급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작성),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원의 퇴직시 작성),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유직업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시 작성) 등이 있다.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압계표·지급명세서 등의 지급명세서 간주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① 세금계산서교부의 지급명세서간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공자는 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거래는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거래는 과세사업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이는 거래이므로 아직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소득의 뜻이 없다.

반면에 면세거래는 계산서만 교부하며 특히 개인이 받는 자유직업적 사업소

특의 경우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공급받으면서 소득을 지급한다고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면서 자유직업원천징수를 한다. 이러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지급명세서로 간주되는 것이다.

② 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간주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이유는 거래상대방의 소득금액의 원천을 파악하여 세원의 포착에 그 목적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증빙으로서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교부되어 그들의 수입 및 소득상황이 집계·파악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 조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출의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운송장비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③ 개별 지급명세서로 같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증권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④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⑱ 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을 준용한다. (2010. 3. 31 개정)

6.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지급일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지급일이 3월 30일이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즉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전산·수동에 구분없이 연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결국 소득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조건에 따라 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이 실무적으로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데 특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지급일을 판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

이밖에 이자소득 중 할인어음에 대한 이자와 사채할인발행차금 이자부분은 각각 어음 만기일 및 사채원금상환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며 분할지급한 각각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제출 (차년도 3월 10일까지)

① 근로소득 지급년의 다음 연 3월 10일까지 등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있어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퇴직소득·퇴직금 등은 퇴직금을 지급한 날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 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1 2. 27 개정)

②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에서 그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급일의 판정에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③ **소득처분시 소득변동통지한 다음 달 말일**

이밖에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 했을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산처리디스크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 기본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제4항)

①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전산매체 제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규모업종, 즉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매수가 50매 미만인 업종이나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업종 등은 서류문서제출을 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특별사유시 지급명세서 제출연장

① 특별사유시 제출기한연장·면제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신고서 작성제출 등과 별도의 의무인 바, 소득자료입수의 뜻이 있다. 소득자료가 입수된다고 하여 즉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특수사유발생시 지급명세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납세협력의무는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 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16조를 준용하는데, 원천징수 명세서제출로 대신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6) 세무서장 등의 지급명세서제출요구 (소득세법 제164조제8항)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의 비용이나 원가로서 거래증빙의 역할 이외에 소득수취자의 과세자료인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등의 과세관청은 자신의 과세절차나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지급명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가산세의 적용여부와 불이익

① 일반적인 가산세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즉 매년 2월 말일을 뜻함)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지급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일정기간의 지연제출가산세 개념으로 경감률도 있었으나 96년부터는 기한 경과 후에는 제출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득지급에 대해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그 의제지급시기 및 전월과 전년의 급여를 통합하여 차월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가 12월에 귀속되는 급여 및 12월에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이는 다음 해 지급으로 본다. 즉, 퇴직연도의 다음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III. 지급명세서양식과 작성방법 등

1) 지급명세서 확인조사

다음의 시행규칙은 법인세결정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와 명확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2) 지급명세서의 유형

소득세법상의 지급명세서는 동 법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용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제반 소득용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납세조합 등을 위한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이를 지급명세서로 본다.